

양 천 구 시 정 요 구

제 목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 부적정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■■■■동

내 용

1. 업무개요

■■■■동은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치회관 어울림사랑방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8조 및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」 제5조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·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급기준은 ‘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2(아래)’와 같다.

지급대상	지급기준	비고
구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1일 4시간 이상 참여한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	① 급식비 :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의 급량비 금액을 준용하여 상한액으로 정한다. ② 활동용품비 등	“급식비” 지급은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한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▣▣▣▣동은 감사대상 기간 동안 *** ** 자원봉사자에게 1일 4시간 이상 참여시 급량비 금액을 준용하여 급식비를 지급하여야 하나, 자원봉사자 *** 외 3명에게 1일 최대 급식비를 초과한 금액을 지급하여 총 168,000원을 과다지급하였다.

[표]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 부적정 내역

연번	지급월	대상자	봉사일시	지급금액(원)	부적정 지급 내역
1	2023.2.		*.**. 10시~18시	16,000원	급식비 8,000원 과다 지급
2	2023.3.		*.**. 10시~18시	16,000원	급식비 8,000원 과다 지급
3	2023.3.		*.**. 10시~18시	16,000원	급식비 8,000원 과다 지급
4	2023.4.		*.**. 10시~18시	16,000원	급식비 8,000원 과다 지급
5	2023.4.		*.**. 10시~18시	16,000원	급식비 8,000원 과다 지급
6	2023.4.		*.**. 10시~18시	16,000원	급식비 8,000원 과다 지급
7	2023.5.		*.**. 10시~18시	16,000원	급식비 8,000원 과다 지급
8	2023.6.		*.**. 10시~18시	16,000원	급식비 8,000원 과다 지급
9	2023.7.		*.**. 10시~18시	16,000원	급식비 8,000원 과다 지급
10	2023.8.		*.**. 10시~18시	16,000원	급식비 8,000원 과다 지급
11	2023.9.		*.**. 10시~18시	16,000원	급식비 8,000원 과다 지급
12	2023.9.		*.**. 10시~18시	16,000원	급식비 8,000원 과다 지급
13	2023.11.		*.**. 10시~18시	16,000원	급식비 8,000원 과다 지급
14	2023.11.		*.**. 10시~18시	16,000원	급식비 8,000원 과다 지급
15	2023.12.		*.**. 10시~18시	16,000원	급식비 8,000원 과다 지급
16	2024.1.		*.**. 10시~18시	16,000원	급식비 8,000원 과다 지급
17	2024.2.		*.**. 10시~18시	16,000원	급식비 8,000원 과다 지급
18	2024.4.		*.**. 10시~18시	16,000원	급식비 8,000원 과다 지급
19	2024.4.		*.**. 10시~18시	16,000원	급식비 8,000원 과다 지급
20	2024.5.		*.**. 10시~18시	16,000원	급식비 8,000원 과다 지급
21	2024.5.		*.**. 10시~18시	16,000원	급식비 8,000원 과다 지급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▣▣▣▣동은 ▣▣▣▣동*****의 경우, 주민자치회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, 자치회관 유희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. 2022년도 20명의 봉사자로 운영되었으나, 주민자치회가 50명 위원에서 30명으로 줄면서 2023년도부터 봉사자 수가 13명으로 줄어든 사실이 있습니다. 매월 평일(오전/오후 2회)과 주말(오후 1회)로 나누어 봉사 근무명령을 내리고 있으며, 급히 다른 일정이 있어 해당 일자에

봉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봉사자로 대체하여 유희공간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조치하고 있습니다. (※ 1일 8시간 봉사 근무명령을 내린 사례 없음.) 해당 지적된 내역은 오전/오후 달리 봉사 근무명령 되었으나, 유희공간의 지속적인 운영과 봉사자가 없어 문을 닫아 발생하는 민원 방지를 위해 주민봉사자 스스로 불가피 하루 2회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.

그러나 급식비는 1일 4시간 이상 참여하였으며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㉮동에서는 이 기준에 맞지 않게 지급하였므로 위 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.

5. 조치할 사항

㉮동장은

과다지급한 자원봉사자 급식비 총 168,000원을 회수 처리하시고,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,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 (시정)